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4. 7.



**대구광역시 달서구**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**[위생과]**

# 제안설명서

설명자: 위생과장

❖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## □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.

-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,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시설을 관리할 전문적이고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

## □ 먼저, 시설 및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달구벌대로 1095 소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2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,
- 2021. 11월 공모를 통하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: 김범준)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2. 1. 1.~2024. 12. 31.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오다, 2024. 7. 1.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현재는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중입니다.
-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어린이급식 16명, 사회

복지급식에 4명이 투입되어 있으며, 2024년 사업예산은 9억 4천 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.

- 주요 사업으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를 방문하여 위생·영양관리 지도, 식중독 예방 교육, 건강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,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으로
- 2024. 6월 기준 어린이급식소 314개소를 관리 운영중에 있고, 사회복지급식소는 현재 노인·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2024년 하반기 35개소 이상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**□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7월 의회 동의 후, 8월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 2에 규정한 식품 또는 영양관련 대학,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區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고, 9월 중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.
- 위탁기간은 2025. 1. 1.~2027. 12. 31.까지이며, 조직구성은 센터장 포함 총 21명으로 소요예산 및 조직 구성은 향후 국시비 보조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
- 주요 위탁사무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명시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**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**

-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노인·장애인들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본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**□ 감사합니다.**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092407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7.

제출자: 달서구청장  
(위생과장)

## 1. 제안이유

- 달서구 어린이·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근거하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~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

○ 필요성

-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·영양관리 등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
- 달서구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역량을 가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전문가의 체계적·지속적 관리가 가능함

다. 위탁사무 내용: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

-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
- 식단·표준 레시피 개발 및 지원
- 대상별(어린이, 노인·장애인, 원장, 조리원 등) 급식 식생활 교육 등

라. 위탁시설 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모(사용층)	現 위탁현황		비 고
			위탁기간	수탁기관	
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	달구벌대로 1095 (신당동)	3층 320호 (연면적 230.06㎡)	2022. 1. 1.~ 2024. 12. 31.	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	

마. 위탁기간: 2025. 1. 1.~2027. 12. 31. 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
○ 대 상
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이 가능한 식품·영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한국보건사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-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·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
○ 방 법: 달서구 홈페이지 및 e-나라도움 공고

○ 수탁심사위원회 구성: 6~9명(관련분야 전문가, 구의원, 공무원 등)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: 정책자문위원회 자문

○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한 민간위탁이 적절함

○ 축적된 전문성 기반의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함

○ 관계 법률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 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 있는 운영 가능함

○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: 적정의견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1 참조

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: 붙임 2 참조

다.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계획: 붙임 3 참조

라. 향후 추진일정

○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: 2024. 8월

○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2024. 9월

○ 선정결과 공고 : 2024. 10월

○ 위탁계약 체결 등 : 2024. 10월

## 1.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### 법 제21조(설치·운영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삭제 <2023. 8. 8.>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### 시행령 제12조의 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## 2.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

### 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  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  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  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-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# 3.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####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

**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**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## 4.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### 제5조(사무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
-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### □ 정책자문위원회(복지·문화·보건 분야) 검토 의견

#### ○ 세부 항목별 검토사항

검토기준	검 토 내 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지자체가 직영하는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민·관의 협력적 동반자모델에 따라 대부분 센터 운영을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적 측면과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인력 운용의 어려움, 운영비용 부담 가중, 전문성 저하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지자체 직영 방식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.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	지난 3년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 경험에 더하여 관련 조례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3. 경제적 효율성	민간 위탁 방식은 적극적 인적·물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수탁 운영기관의 축적된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뿐만 아니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점에 비춰볼 때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.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『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』과 『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계량적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.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기존에 다양한 공공사업을 수행해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해도 관리·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 위·수탁 계약체결 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을 적시하고, 정기적인 지도·감독 및 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.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	센터는 지역의 대표적인 보육·사회복지 등 급식시설을 관리·지원하는 센터로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과의 서비스 충돌이나 독과점 등의 폐해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됨.

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종합하면 「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」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,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2024. 6. 17.

달서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 진 흥



검토기준	검토내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근무 직원은 수탁기관과의 근로 계약체결로 인력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●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·활용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가 용이합니다.</li> </ul>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운영되기에 공공성, 안전성 확보가 용이합니다.</li> <li>● 급식과 관련하여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위탁을 진행하더라도 구청의 관련팀에서 지속적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.</li> </ul>
3. 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등 기존 자원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● 경제적 효율성을 추진하되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.</li> </ul>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므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● 민간의 전문지식의 수준 관리가 필요합니다.</li> </ul>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기에 성과 측정에 용이합니다.</li> </ul>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계획 관리 및 예·결산의 사전승인 검토와 관련하여 위·수탁 협약에 따라 진행되기에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합니다.</li> </ul>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민간수행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진함이 적절합니다.</li> </ul>

정책자문위원회 위원      **성명: 곽대훈**  (서명)

검토기준	검토내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어린이와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도 및 식생활관리 등 건강증진과 영양관리를 위해 원활하고 전문적 서비스제공에 있어 직접운영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	안전한 급식관리 지원과 식생활교육 등의 특수한 분야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방식이 공공성과 안전성을 충족한다고 사료됨
3. 경제적 효율성	위탁운영을 통해 인건비 상승 및 인력충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관련분야에 특화된 민간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, 대상별 특수한 요구충족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역량을 활용하고 관련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관련 사업결과에 대한 대상자별 사업만족도 조사와 사업운영의 제반 성과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가능하며, 정량, 정성적 평가와 성과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위탁 및 수탁 업무관련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 및 평가계획을 위탁협약 실시 전 점검하고, 관할부서의 지도감독과 상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의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. 이를 통해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서비스제공 대상별 다양하고 세부적인 급식운영과 식생활 및 영양지도가 요청되며, 관련된 전문서비스 공급이 필요함. 민간의 우수인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므로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

정책자문위원회 위원      성명: 최 지 현      (서명) 

##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

◆ 區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·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I 추진근거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5조

### II 현위탁 현황

- 위탁기관: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: 김범준)
- 위탁기간: 2022. 1월 ~ 2024. 12월(3년) \* 최초위탁: 2013. 11. 6.
- 위탁사무: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(센터장: 최미자)
  -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
  - 식단·표준 레시피 개발 및 지원
  - 대상별(어린이, 노인·장애인, 조리원, 원장, 교사 등) 급식 식생활 교육 등
- 등록관리: 314개소(어린이집 228, 유치원 46, 아동복지시설 외 40)(2024.6.1.기준)
- 조 직: 총 21명(센터장 1, 팀장 3, 팀원 17)
  - 위생·운영팀(5명), 기획팀(5명), 영양팀(10명)  
↳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 업무 신설(2024. 7. 1.)
- 사업예산(2024년): 940백만원(국비 470, 시비 235, 구비 235)

### III 재위탁 개요

- 위탁기간: 2025. 1. 1.~2027. 12. 31.(3년)
- 위탁사무: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사업 전반
- 위탁방법: 민간위탁
- 수탁자격
  -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식품·영양관련 비영리 법인
  - 「한국보건사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사업진흥원
  -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·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-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- 위탁금액: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된 보조금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
### IV 세부추진계획

#### 1.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

- 근 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
- 기 간: 2024. 6. 14.~6. 19.
- 방 법: 정책자문위원회 복지·문화·보건 분과 위원 서면자문 검토
- 내 용: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[붙임 1]

#### 2. 區 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

- 근 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
- 기 간: 2024. 7. 18.~7. 26.(제306회 임시회)
- 내 용: 민간위탁 추진 區 의회 사전 동의

### 3. 모집공고 및 접수

- 모집방법: 공개모집 ※ 공고문(안) [붙임 2]
- 공고기간: 2024. 8. 1.~8. 23.(23일간)
  - 모집결과 신청기관이 없거나, 1개소일 경우 재공고: 7일간
- 접수기간: 2024. 8. 26.~8. 30.(5일간)
  - 접 수 처: 달서구청 위생과(별관 6층, 식품안전팀)
  - 접수방법: 직접 방문제출(근무시간 09:00~18:00)
    - \* 우편·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

### 4.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▷ 별도계획 수립 추진

- 근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
- 구성: 9인 이내
  -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  - 관련 업무 공무원
  -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위원임기: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촉
- 개최시기: 2024. 9월 중

### 5. 위·수탁계약 체결 ▷ 별도계획 수립

- 근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
- 일자: 2024. 10월 중
- 주요내용: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수탁기관의 의무,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 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

## V

## 행정사항

- 구 의회 사전 동의안 제출: 2024. 7. 3.(수)
- 모집공고 및 접수: 2024. 8. 1.~8. 30.
-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: 2024. 9월
- 위탁계약 체결: 2024. 10월

- 붙임 1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2. 모집공고(안)
3. 관계법령